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3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8월 23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근로기준법」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구립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여,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일조하고, 노후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 적정 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 단축 (안 제7조제1항제2호)
- 나. 리모델링 예정인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인상분 반영 (안 제8조 관련 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4, FAX 820-1474, E-mail : dongsuyeo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”을 “제4호, 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소년시설의”를 “청소년시설을”로, “사용대상자”를 “사용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의”를 “9세 이상 24세 이하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그 외”를 “일반인”으로, “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용시설에 대해”를 “청소년시설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08:00 ~ 22:00(토요일, 공휴일은 09:00 ~ 22:00)”을 “09:00 ~ 21:00(공휴일은 09:00 ~ 18:00)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“사용료””를 ““사용료 등”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, 강습료”로 하며, 같은 항

후단 중 “다만” 을 “다만,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전단 중 “말한다. 이하 같다) 으” 를 “말한다)으” 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별표1” 을 각각 “별표 1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용료” 를 “사용료 등의” 로 하고, “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”를 “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사용료” 를 “사용료 등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사용료를” 을 각각 “사용료 등을” 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사용료” 를 “사용료 등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운영하고자하는” 을 “운영하고자 하는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9명이내” 를 “9명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과반수이상” 을 “과반수 이상” 으로, “해산 한다” 를 “해산한다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작” 을 “개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서” 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, 「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」 및” 을 “, 「사회복지 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」 및 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조직,인사,보수,재산·물품관리” 를 “조직, 인사, 보수, 재산·물품관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작성 비치” 를 “작성·비치” 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시설장등의 임면)” 을 “(시설장 등의 임면)” 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시설장등의 자격요건)” 을 “(시설장 등의 자격요건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없다” 를 “없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부터 제5호까지 중 “금고이상” 을 각각 “금고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8조 관련 별표 1 제1호 사용료 중 독서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단 위	사용료 상한 (금액단위 : 원)		
독서실 사용료	1인 1회	일반형	청소년 : 500	일반인 : 1,000
		고급형	청소년 : 3,000	일반인 : 5,000
	정기권 (10일 이상 1개월 미만)	일반형	청소년 : 15,000	일반인 : 30,000
		고급형	청소년 : 60,000	일반인 : 100,0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(이하 “청소년 시설” 이라 한다)이란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 (이하 “구” 라 한다)가 「청소년 기본법」 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설치 ·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가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청소년 복지 지원법」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제5조(운영의 원칙) ① (생 략) ② 청소년시설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,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청소년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5조(운영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제4호, 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<u>청소년시설의</u> 이용 또는 <u>사용대상자</u> (이하 “사용 자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청소년 :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의 사람	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<u>청소년시설을</u> ----- <u>사용하는 자</u> ----- ----- -----. 1. ----- 9세 이상 24세 이하인 -----

2. 그 외 :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
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

② 구청장은 이용시설에 대해 회원을
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시간) ① 청소년시설의
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
따른다. 다만, 구청장이 시설 또는
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
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(생략)

2. 그 외 청소년시설 : 08:00 ~
22:00(토요일, 공휴일은 09:00
~ 22:00)

② (생략)

제8조(사용료 등) ① 구청장은 청소
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
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, 강습료
및 대관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를
정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부과
· 징수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
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
한다. 다만 제7호와 제8호의 경우
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.

1. ~ 8. (생략)

2. 일반인 ----- 사람

② ---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--
-----.

제7조(사용시간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09:00 ~
21:00(공휴일은 09:00 ~ 18:00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 등) ① -----

----- “사용료 등” 이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사용료, 강습료 -----
--. 다만, 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서 소상 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별표1의 사용료와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별표1의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·감면 청소년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인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한정한다.

⑤ (생략)

⑥ 사용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의2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,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

③ -----

----- 말한다)으

----- 별표 1-

----- 별표 1-----

-----.

④ ----- 사용료 등의

-----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사용료 등-----

-----.

제8조의2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--
----- 사용료 등을 --

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1. 2. (생 략)

3.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·징수·감면·반환 등에 관한 사항

제10조(수탁자 선정 등) ① (생 략)

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,

-----사용료 등을 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사용료 등-----

제10조(수탁자 선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운영하고자 하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
----- 9명 이내-----
-----.

② -----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③·④ (생 략)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비용부담 및 운영지원) ①·② (생 략)

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」 및 「사회복지관직원 보수지원기준」 등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영규정)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, 인사, 보수, 재산·물품 관리,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및 지도

- 과반수 이상-----
----- 해산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

----- 개의-----
-----.

② ----- 대해서-----

--.

제16조(비용부담 및 운영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, 「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」 및 -----
-----.

제19조(운영규정) ① -----
---- 조직, 인사, 보수, 재산·물품 관리-----

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
시달 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
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
규정을 작성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20조(시설장등의 임면) ① ~ ③
(생 략)

제21조(시설장등의 자격요건)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
종사자가 될 수 없다

1. 2. (생 략)
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
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
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
아니한 사람
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
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
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
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
있는 사람

-----.

② -----

----- 작성 · 비치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시설장 등의 임면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시설장 등의 자격요건) ----

----- 없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금고 이상-----

4. 금고 이상-----

5. 금고 이상-----

현행

[별표 1]

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(제83조관련)

1. 사용료

구 분	단 위	사용료 상한 (금액단위 : 원)
독서실 사용료	1인 1회	1,000
	1개월(정기권)	30,000
인터넷 사용료	1시간	1,000
사물함 사용료	1인 1회	500

2. 강습료

구분	프로그램	월 강습료 상한 (1시간 기준, 금액단위 : 원)					
	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
프로그 램 강습료	외국어	30,000	40,000	50,000	65,000	77,000	86,000
	음 악	35,000	55,000	70,000	82,500	96,500	107,000
	정보·과학	30,000	40,000	50,000	65,000	77,000	86,000
	생활체육 및 전통문화	20,000	30,000	40,000	50,000	58,000	64,000
	문예 및 창작	20,000	30,000	40,000	50,000	58,000	64,000
비고	1. 프로그램 영역 구분 1) 외 국 어 : 영어,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) 음 악 : 성악, 국악,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) 정보·과학 :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교실 등의 영역 4)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: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, 사예 등의 전통문화 영역 5) 문예 및 창작 :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.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. 3. 그 밖에,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(문화원, 구민체육센터, 복지관 등) 2개소 이상의 산술평균한 강습료를 준용한다.						

3. 대관료

구분	1회 사용료 상한(기본 3시간)	비 고
100석 이상	200,000원	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
100석 미만	100,000원	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

개정안

[별표 1]

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(제83조관련)

1. 사용료

구 분	단 위	사용료 상한 (금액단위 : 원)			
독서실 사용료	1인 1회	일반형	청소년 : 500	일반인 : 1,000	
		고급형	청소년 : 3,000	일반인 : 5,000	
	정기권 (10일 이상 1개월 미만)	일반형	청소년 : 15,000	일반인 : 30,000	
		고급형	청소년 : 60,000	일반인 : 100,000	
인터넷 사용료	1시간	1,000			
사물함 사용료	1인 1회	500			

2. 강습료

구분	프로그램	월 강습료 상한 (1시간 기준, 금액단위 : 원)					
	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
프로그 램 강습료	외국어	30,000	40,000	50,000	65,000	77,000	86,000
	음 악	35,000	55,000	70,000	82,500	96,500	107,000
	정보·과학	30,000	40,000	50,000	65,000	77,000	86,000
	생활체육 및 전통문화	20,000	30,000	40,000	50,000	58,000	64,000
	문예 및 창작	20,000	30,000	40,000	50,000	58,000	64,000
비고	1. 프로그램 영역 구분 1) 외 국 어 : 영어,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) 음 악 : 성악, 국악,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) 정보·과학 :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교실 등의 영역 4)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: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, 사예 등의 전통문화 영역 5) 문예 및 창작 :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.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. 3. 그 밖에,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(문화원, 구민체육센터, 복지관 등) 2개소 이상의 산술평균한 강습료를 준용한다.						

3. 대관료

구분	1회 사용료 상한(기본 3시간)	비 고
100석 이상	200,000원	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
100석 미만	100,000원	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